

- 동북아평화 번영의 시작, 인권존중 실천 -  
**2025년도 인권경영 추진 결과보고서**

**2025. 12**

운 영 관 리 실

# I

## 인권경영 추진 개요

### 1 배경

❖ 추진근거 :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제29차 상임위원회('18.8.9.)에서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결정

-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및 인권경영 실천 선도 역할 요구('18.8.)
- 우리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,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권경영의 도입과 확산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권위 「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」에 따른 인권경영 이행계획을 수립함('18.11.)

### 2 2025년 추진 경과

- 2025년도 인권경영 추진 계획 수립 : '25. 2월
- 인권경영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: '25. 2월
- 2025년도 전직원 인권교육 실시 : '25. 4월~
- 2025년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: '25. 6월
- 인권실태조사 : '25. 9월
-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 : '25.12월

## II

# 인권경영 추진 체계

## 1 인권경영 단계별 목표 및 주요활동

### <전략체계>

추진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관의 역할과 영향력 증가에 따른 인권 문제 대두</li> <li>• 국제사회 및 다국적 기업의 선도적인 인권경영 수행으로 인한 사회적 기대 가치 부응</li> <li>•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(2023~2027)에서 시급히 해결하거나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100개의 핵심 인권과제를 선정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권고 사항 강조</li> </ul> <p>’18년 8월,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실현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장에게 「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」을 활용한 인권경영 실행을 권고</p>			
전략목표	인권경영 기반구축	인권경영 문화실천	인권경영 내실화	
실천방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 직원 인권경영 생활화를 통한 인권경영 실천마인드 함양</li> <li>• 인권경영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확대</li> <li>•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</li> <li>• 인권경영 공유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및 자체교육 실시로 인한 인권경영 문화 확산</li> </ul>			
단계	1단계 인권경영 체계 구축	2단계 인권영향평가	3단계 인권경영 실행	4단계 구제절차의 제공
세부추진과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권경영 담당 부서 구성 및 담당자 지정</li> <li>• 인권경영 운영 규정 제정</li> <li>• 인권교육과 훈련 실시</li> <li>•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, 확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</li> <li>• 기관운영 및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</li> <li>• 평가결과 보고 및 공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권리스크 방지 조치 계획 수립</li> <li>• 방지조치 실행 방법 전달</li> <li>• 인권경영 추진현황 보고서 작성 및 공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</li> </ul>

## 2 인권경영 이행지침

- 재단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체계적 이행을 위한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('20.4.)
- 지침에는 인권경영 체계, 인권교육, 인권경영위원회, 인권영향평가, 인권침해 구제 내용 기술

## 3 인권경영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

- 인권경영담당부서(운영관리실) 및 인권경영담당관: 계획수립, 교육, 위원회 운영, 영향평가 등 인권경영 제반업무 수행

## 4 인권경영위원회 구성

- 재단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인권 침해 사안의 조사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 운영
- 법조, 노무, 언론, 인권단체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위원 1명 선임

## 5 인권경영 선포

- 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노사합동 인권정책 선언('22.12.~)
- 인권정책선언문 홈페이지 게재

## 6 인권교육

- 기관 내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 및 갑질에 따른 차별 예방을 사례별로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
  - 인권교육 이수율('25.11.30. 기준) : 67.9% (76명/ 112명)
    - ※ 이러닝 학습, ~12.26.까지 진행중
- 인권경영담당자 인권역량강화 과정 수료('25.2.)

### Ⅲ

## 인권영향평가

### 1 평가절차

-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인권영향평가 실시



### 2 평가지표

#### □ 기관운영 평가지표

- 인권경영체제, 고용상 비차별,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, 산업안전, 고객인권 및 직장 내 인권보호 등 6개 분야 18개 항목 102개 세부지표 선정

#### □ 주요사업 평가지표

- 대내외 환경 및 중장기전략을 바탕으로 '국제네트워크 사업' 1개 분야 3개 항목 12개 세부지표 선정

### 3 평가방법 및 기준

#### □ 평가방법

- 주관 부서 : 운영관리실
- 평가 대상 : 항목별 주관부서
- 평가 방법
  - 1차 평가 : 항목별 주관부서 자체평가
  - 2차 평가 : 외부 전문가 총괄 평가 및 심의·의결

## □ 평가기준

○ 각 지표별 추진실적이 평가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를 평가

○ 점수 체계

※ 점수는 총점(100점) 환산방식으로 수행

구분	예	보완필요	아니요	정보없음	해당없음
평점	2점	1점	0	평가제외	평가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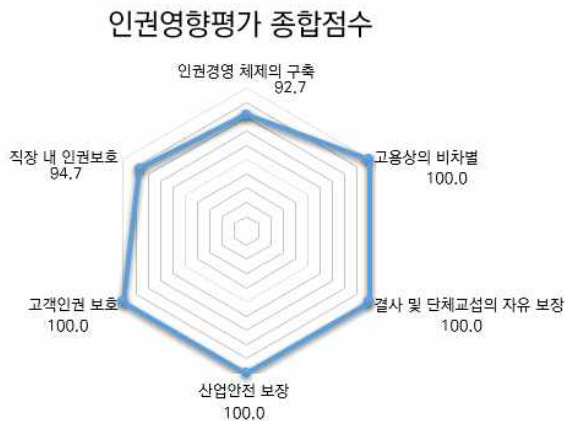
○ 평가 등급 및 평점

구분	1등급	2등급	~	9등급
평점	100점~90점	90점 미만~80점	~	20점 미만~0점

## 4 결과 요약

### □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9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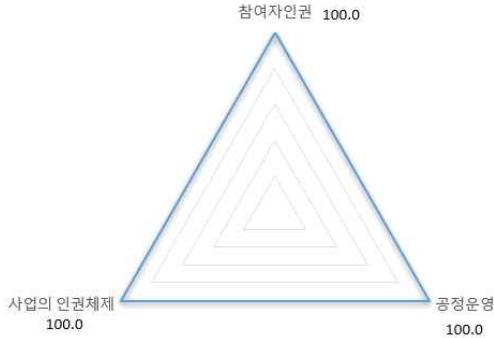
- 고용상의 비차별,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, 산업안전 보장 및 고객인권 보호 분야는 매우 우수
-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, 직장 내 인권보호 분야는 일부 개선 필요



No	분야	결과			
		배점	조정 배점	득점	달성률
1	인권경영 체제의 구축	82	82	76	92.7%
2	고용상의 비차별	28	28	28	100.0%
3	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	28	28	28	100.0%
4	산업안전 보장	14	14	14	100.0%
5	고객인권 보호	12	12	12	100.0%
6	직장 내 인권보호	40	38	36	94.7%
총점		204	202	194	96.0%

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(국제네트워크사업) 결과 100%

- '국제네트워크 사업'에 대한 사업의 인권체제, 공정운영 및 참여자 인권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우수하게 운영



No	분 야	결과			
		배 점	조정 배점	득점	달성률
1	사업의 인권체제	4	4	4	100.0%
2	공정운영	10	10	10	100.0%
3	참여자인권	10	10	10	100.0%
총점		24	24	24	100.0%

## 5 총 평

-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가 96%로 매우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으며, 주요사업(국제네트워크사업) 결과도 100%으로 유지되는 등 인권경영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으나,
-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, 직장 내 인권보호 분야는 일부 개선 필요

## 6 주요 인권이슈 선정

- 인권이슈에 대한 보호의지 표현 등 「인권경영 이행지침」 개정 권고
  - 재단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선언문 조항 추가
  - 부정적 인권영향 발견시의 조치(긴급 인권교육 및 인권보호 캠페인 실시 등) 등 모니터링 조항 추가
  - 외부 구제기관의 구제절차를 희망할 경우, 재단은 이를 수용하고 적극 조력한다는 내용 추가
- 구제절차의 구체적인 실행방법, 절차 운영 노하우를 담은 구제절차 매뉴얼 마련 권고
-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희롱·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 지침에 따라 기관 특성을 반영한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매뉴얼 마련 권고

## 1 인권침해 구제절차

- (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)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신고
- (인권침해 사건 처리) 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담당관은 20일 이내 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이사장에게 보고
- (위원회 심의) 인권침해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



<구제절차 신고·접수 및 처리 절차>

## 2 인권침해 신고 사례

※ 해당 없음

## 1 인권경영 이행지침 개정

- 「인권정책선언문」 내 재단 사업의 핵심이해관계자 및 주요 인권 이슈를 표현하는 등 재단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선언문 조항 추가
  - “12. 동북아역사재단은 글로벌 시민 및 대한민국 국민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발굴하고 알리는 노력을 지속한다.”
    - ※ 개정 선언문은 시무식 등에서 선포
- 모니터링에 의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발견한 경우, 문제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요소를 제거하는 ‘즉각적 조치’를 지침에 추가 (제15조 내 제4항 신설)
  - “제15조(주관부서) ④ 인권경영담당관은 재단 정책·제도의 인권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며, 인권침해 사항 발견 즉시 해당 정책·제도 주관부서에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.”
- 피해자가 재단 구제절차 대신 외부 구제기관(권익위, 노동청, 사법기관, 시민단체 등) 구제절차를 희망할 경우, 재단이 ‘적극 조력’한다는 지침 추가(제20조 내 제6항 신설)
  - “제20조(인권침해행위의 조사와 처리) ⑤ 피해자가 재단 구제절차를 거부하고 외부 구제기관의 구제절차를 희망할 경우, 재단은 이를 수용하고 적극 조력한다.”

## 2 매뉴얼 마련

---

-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인권 구제 매뉴얼 마련
  - 성희롱·성폭력을 예방하고, 사안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공정하고 신속한 사안 처리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통해,
  -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 회복 및 보호조치 등 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인권경영 업무 효율성 제고

## 3 기타 사항

---

- 2025년 인권경영 추진 결과 공시(재단 누리집)
- 재단 내 인권경영 추진 현황 공유 및 확산